2025년 제7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**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**

2025년 6 월 30 일

여 수 시 장 정기명

여수시 규칙 제863호

붙임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

여수시 규칙 제863호

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일부개정규칙

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현금 3백만원”을 “3백만원”으로, “한다”를 “하며,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, 국·공채 등 유가증권으로 하되 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부터 6월”을 “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하자 보증기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보증금) ① 대행업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으로써 현금 3백만원을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.	제9조(보증금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3백만원---------- ---------- 하며,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, 국·공채 등 유가증권으로 하되 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.	④ ----------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하자 보증기간---------- -----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